

귀하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 형사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존중하는 태도로 품위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 ✓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 판사가 보석 및/또는 석방 조건을 정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보호될 권리.
- ✓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 누군가 귀하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청에 연락하십시오. 경찰이나 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괴롭히거나 협박을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변호사를 만나 더 이상 귀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의를 줌
 2. 해당 당사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 및 기소
 3. 당사자가 석방된 상태인 경우, 다시 감옥으로 보내도록 판사에게 요청
 4. 귀하가 속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시설(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 ✓ 피고의 구속 후 해당 사건의 시기적절한 처분에 관한 권리.
- ✓ 지방 검사의 요청으로 법원에 출두하느라 업무 시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해고되지 않을 권리.
- ✓ 피고가 참석할 권리가 있는 모든 법원 심리에 참석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
- ✓ 귀하의 주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권리.
- ✓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보석 심리에서 증언할 권리.
- ✓ 피고가 재판 및 형 선고를 위해 언제 법원에 출두할 것인지에 대해 알 권리, 그리고 재판일이 변경되는 경우 통보 받을 권리.
- ✓ 검찰청의 누군가와 의논할 권리(이 권리에 따라 귀하에게 피해자/증인측 법률 보조원이

배정됨).

- ✓ 피고가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피고의 다른 전과 기록에 대해 들을 권리.

✓ 피고측 변호사와의 면담 여부를 결정할 권리.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대개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변호사를 두게 됩니다. 변호사나 수사관이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누구 편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귀하에게 밝혀야 합니다. 귀하는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화 녹음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연락을 취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지 말지 여부는 귀하가 결정할 사안이며, 검찰청에서는 그러한 결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그들과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의 누군가가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귀하의 사건에 배정된 피해자 증인측 법률 보조원에게 알려주시면 그들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변호사나 조사관과 면담을 할 경우 언제나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중범죄 사건의 경우, 귀하에게는 판사에게 제출할 판결 전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전달 받을 권리와 판결 전 보고서 작성자와의 인터뷰에 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사는 “판결 전 보고서(presentence report)” 작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판사에게 피고, 범죄 및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피해 영향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판결 전 보고서는 기밀로 취급됩니다. 지방 검사, 판사, 피고측 변호사 및 피고만이 보고서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검찰청에서 귀하의 사건에 배정된 피해자 증인측 법률 보조원에게 요청하는 경우, 귀하도 형 선고 전에 보고서의 일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열람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a) 범법 행위 요약, (b) 범법 행위에 대한 피고의 견해, (c) 피해자 진술 요약, (d) 보고서 작성자의 형 권리안이 포함됩니다.

✓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형 선고 시 증언할 권리. 귀하는 형 선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1. 판사에게 서신 쓰기, 및/또는
2. 형 선고 시 증언을 위해 직접 출두, 및/또는
3. 판결 전 보고서가 지시된 경우, 판결 전 보고서에 들어갈 피해 영향 진술하기.

귀하가 서신을 작성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정서적, 신체적 및 재정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었으며 귀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보
2.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져야 할 처분에 대한 귀하의 견해(교도소 수감, 상담, 귀하 및 귀하의 가족에게 접근 금지, 범죄와 관련하여 귀하가 부담한 비용 중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상하기 등)
3. 그 밖에, 피고 또는 본 사건에 대해 판사에게 알리고 싶은 정보

판사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원하는 경우 서신을 다음 문구로 시작하십시오.

Re: State v. (피고의 이름)
Case No. (사건 번호)

“재판장님께: (이것은 판사를 부르는 호칭임)... 저는 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여, 귀하가 판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이어가면 됩니다. 작성한 서신을 귀하의 사건에 배정된 피해자 증인측 법률 보조원에게 발송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증인측 법률 보조원이 귀하의 서신을 판사에게 보냅니다. 피고측 변호사 또한 귀하의 서신 사본을 받게 되며, 아마도 피고가 귀하의 서신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형 선고 시 증언을 희망하는 경우, 검찰청에서 귀하의 사건에 배정된 피해자 증인측 법률 보조원에게 알려서, 귀하가 발언할 시간을 따로 떼어 들 수 있도록 합니다.

✓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 정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권리.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VCCB)는 병원비, 순해 본 임금 및 상당료 등과 같이 범죄와 관련된 비용을 강력 범죄의 무고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VCCB에서는 유족들에게 장례 비용을 배상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부양 가족에게 생활비 손실분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VCCB는 도난 당하거나 손상된 재산에 대해 변상하지 않으며, 귀하에게 비용 변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출처 (예: 병원비의 경우 의료 보험, 손해 본 임금의 경우 노동자 재해 보상)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상을 신청하려면 검찰청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작성하거나, 강력 범죄 피해 보상을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아래 참조).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Violent Crimes Compensation Board)
1-907-465-3040 또는 1-800-764-3040
www.doa.alaska.gov/vccb

✓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배상을 받을 권리. 배상은 해당 범죄로 인한 손실액 중 다른 출처(예: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판사가 피고에게 명령할 때 이루어집니다. 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상 요청 양식(Restitution Request Form)”을 작성하여 본 브로셔를 받은 후 2주 내에 검찰청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지출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경우(따라서, 아직 최종 액수가 나오지 않음), 현재까지의 총액을 제시하고 향후 귀하가 지급할 총액을 대략적인 날짜와 함께 설명합니다.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 배상 요청을 원하지만 해당 양식이 본 브로셔와 함께 들어있지 않았다면, 검찰청에서 귀하의 사건에 배정한 피해자 증인증 법률 보조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그간의 상황에 대해 사건 종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받을 권리.

✓ 귀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가 석방되거나 감옥에서 도주 시 그 사실을 통보 받을 권리. 이러한 요청을 하려면 VINE 시스템(자동 통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되는데, 등록은 1-800-247-9763으로 전화하여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귀하가 서면 요청을 한 경우, 석방 또는 도주 통보와 함께 피고의 최근 사진이 귀하에게 발송됩니다. 최근 사진을 요청하려면,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

Department of Corrections
550 W. 7th Ave. Suite 601
Anchorage, AK 99501-3558
전화: 알래스카 지역 무료 전화 1-877-741-0741

✓ 귀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신 이상을 이유로

피고가 유죄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해당 피고가 정신병원에서 나올 때 통보를 받을 권리. 정신병원에서 석방 또는 도주 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려면 다음 기관으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Alaska Psychiatric Institute
2800 Providence Dr.
Anchorage, AK 99508-4677
전화: 907-269-7100

✓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Alaska Office of Victims' Rights)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 알래스카주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기관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관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들이 알래스카주 형사 사법 기관과의 접촉과 관련하여 알래스카주 헌법 제 1 조 24항 및 다양한 주 법령에 따라 자신들에게 보장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에게는 법 집행 기관 및 기소자측과 최초 접촉 시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십시오.

The Alaska Office of Victims' Rights
대표 전화: (907) 754-3460
무료 전화(알래스카 주): 1-844-754-3460
팩스: (907) 754-3469
www.ovr.akleg.gov

통역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본 기획은 미 법무부 산하 여성 폭력 방지국(Office of Violence Against Women)의 재정 지원을 통해 후원됩니다. 본 문서의 견해는 문서 작성자의 견해이며, 반드시 미 법무부(DOJ)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표명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 8/17



범죄 피해자의 권리



날마다 알래스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범죄는 우리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귀하가 범죄의 피해자라면
귀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